

統一情勢分析 2004-15

#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2004. 7

김영윤(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정란(통일학술정보센터 연구원)

통 일 연 구 원

## <요 약>

### 1.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 현황 및 여건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법·제도가 개선될 경우, 활성화 여지는 매우 높음.

- 북한은 인터넷이 상업적 이익 획득의 중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식, 인터넷을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간 제도적 장치 마련에의 합의 및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쇼핑몰 또는 웹사이트 접속, 상품주문, 대금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증 및 결제, 상품 배송, 마케팅 기술 활용에 의한 고객관리와 사후관리활동 등의 구축
- 인터넷상 정보의 생산·교환·이전 및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표준을 비롯, 화상, 음성, 문자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보안과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기술, 전자결제제도 등과 관련된 기술 등

## 2.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 방안

### 가. 기본방향

-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아날로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자상거래의 주체 선정과 객체인 상품 결정 등을 포함, 제반사항을 점진적·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함.
  - 핵문제 해결의 가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주력함.

### 나. 세부 추진 방안

#### <단계별 추진>

- 핵문제 해결이전, 해결과정, 해결이후로 나누어 전자상거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
  - 핵문제 해결이전 단계에서는 남한이 북한기업과 제휴하여 추진하는 BB2C(남북한 합작기업 대 남한 소비자) 형태의 사업을 추진
  - 제2단계에서는 C2B(남한 소비자 대 북한 기업), C2G(남한 소비자 대 북한 정부)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인터넷 무역을 위한 기반을 확보

- 핵문제 해결 이후에는 B2C(남한 기업 대 북한 소비자), C2C(남한 소비자 대 북한 소비자) 및 대규모 사이버무역을 추진함.

#### <거래대상 재화의 선정>

- 거래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 두 가지로 구분하되,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디지털형 재화에 주력함.
  - 북한 옥류관 음식과 바둑프로그램 CD, 조선실록과 팔만대장경 완역본 등의 판매 및 음성인식, 문자인식, 지문인식 등의 각종 인식기술 소프트웨어 및 워드프로세스, 한의학의료정보시스템, 자연어처리시스템, 위성 등 항공분야, 멀티미디어, 게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분야의 기술 등

####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남북 당국간에는 거래주체, 거래대상, 재산권 보호, 신원확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장치를 마련함.
  -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를 거래대상으로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규범, 합의서 형태의 당국간 법적 규제 장치 등을 마련
  - 제3의 기관에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 상대방이 인증기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사이버 조정 및 중재관련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 사업자간에는 전자상거래 계약조건, 이행방법, 계약 결제, 물류·배송 등의 내용을 결정함.
  - 송금결제방식을 마련하고 결제방식과 결제은행을 합의로 결정
  - 물류관리가 3S, 1L원칙(신속하고: speedy, 안전하고: safely, 정확하게: surely, 저렴: low)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 배송은 물류센터 또는 지역거점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상품으로 구분, 배송 전략을 수립
  - 기술적 측면의 시스템 보안과 시스템 내부의 자료보안을 의미하는 정보보안에 합의

### 3. 정책적 고려사항 및 향후과제

- 북한 사업자와의 계약내용 이행과 집행, 거래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물품의 내용, 포장, 배송, 대금결제, 하자담보와 관련한 제반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 등
  - 물품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사중재 및 상사거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남북한간 직접 결제 수단의 확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반환청구 및 법적 구제수단을 마련
  - 또한 북한 측 계약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사업자 보험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북한 재화나 서비스의 반·출입과 검역에 대한 절차 개선이 요구됨.
  - 디지털 재화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사업자 승인으로, 디지털 재화의 개인별 반출·입에 대해서는 접촉에 대한 승인으로 대처함.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간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의 세부적인 검토를 포함,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중국을 경유하지 않은 남북한 통합망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광섬유가 개성까지 부설되어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인터넷과 모바일 통합, 유·무선망의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목 차 -

I. 문제제기 .....	1
II.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및 여건 .....	3
1. 추진현황 .....	3
2. 추진여건 .....	4
III.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 방안 .....	9
1. 기본 방향 .....	9
2. 세부추진 방안 .....	10
IV. 정책적 고려사항 및 향후과제 .....	21

## I. 문제제기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임.

- 인터넷상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sup>1)</sup>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과 함께,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

○ 북한과의 전자상거래는 당사자간의 거래비용 절감, 사업자의 효율적인 고객관리 및 정보 집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유통의 효율성 및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판매거점이 필요 없어 토지비용이나 종업원 고용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 및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쌍방향 통신을 통해 구매자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음.
- 중간유통단계의 배제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알선중개업, 신용평가업 및 인증업, 대금결제금융업, 택배업 등)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북한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할 경우, 주민의 의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1)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품목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됨.

- 남한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 말 산업자원부가 주도하는 「민·관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이 출범, 2004년 7월까지 의제 발의 수준에서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 그러나 북한과의 인터넷 상거래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개방적인 거래를 전제하고 있는 바, 아직 그 여건이 확립되어 있지 못함.
  - 개인, 기업, 정부가 거래 당사자로서 보장되어야 하나, 남북한의 시장 질서와 관련 법제가 서로 다르고, 상호간의 직접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 원만한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절차 및 수단이 미흡한 상태임.
  -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금지불에 있어 보안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함.
  
- 본 고에서는 남북한 간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여건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 II.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 현황 및 여건

### 1. 추진현황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법·제도가 개선될 경우, 활성화 여지는 매우 높음.
  - 북한은 인터넷이 상업적 이익 획득의 중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식, 1998년부터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인터넷을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3월 남한의 「(주)훈넷」은 북한의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추진협회」, 「조선장생무역총회사」와 합작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 인터넷 게임 사이트(jupae.com), 복권 사이트(dklotto.com)를 개설했으며, 2002년 8월에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mybaduk.com)를 개설한 바 있음.
  -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jupae.com은 도박 사이트로 정부에 의해 판명됨으로써 관련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조정명령 발동(2002.4.2)
  - 「(주)훈넷」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협의 및 승인취소 사전 통보(취소사유 명기) 등의 절차를 거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2001.12.29) 취소(2004.1.19)
  
- 남한의 「(주)북남교역」과 북한의 “삼천리무역총회사”는 ‘독도를 지켜라’라는 모바일게임을 「LG텔레콤」을 통해 서비스(2003.12.12 계약

체결)<sup>2)</sup>하고 있음.

- 본 서비스를 위해 「(주)북남교역」은 북한과 기업접촉에서부터 게임의 개발 및 진행과 서비스까지 모든 진행을 인터넷으로 추진

○ 인터넷을 통한 북한상품의 남한주민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 「(주)북남교역」이 북한상품 인터넷 쇼핑몰 'NK몰(www.nkmall.com)'을 2004년 5월 20일 공식 오픈
- NK몰은 농림수산물·차·음료·주류·건강식품·예술공예품을 비롯하여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북한 토산품 100여점을 판매
- 상품은 북한 「민경련」과 「개선무역총회사」, 「광명성총회사」, 「삼천리무역총회사」 등이 「(주)북남교역」에 공급
- 상품가격은 북한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

## 2. 추진여건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기술적 여건이 성립·충족되어야 함.

### 가. 법적 여건

○ 남한의 기업 또는 주민이 국내 사이트 또는 북한 개설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북한 측 당사자(개인, 기관, 기업소, 단체 등)와 구매 혹은 판매 행위를(북한물품 구매주문) 하는 경우, 이는 남북교류협

---

2) LG텔레콤은 (주)북남교역(www.nkmall.com)과 제휴, 북한의 “삼천리무역총회사”의 모바일 게임 2종(“레성강의 장기전설”, “프로 비치발리볼”)을 무선인터넷 이지 아이를 통해 2004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음.

력법상 남북교역업무에 해당됨.

- 남한의 교류협력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무역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북간의 전자상거래도 남북교류협력법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것임.

○ 구매 혹은 판매행위와 관련, 북측 당사자와의 의사전달은 대북한 주민 접촉으로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주민 사전 접촉승인을 받아야 함.

- 오프라인상 북한 물품을 남한에 들여올 경우, 이는 물자반입에 해당되므로 구매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 물품 반출과 관련, 그것이 전략물자<sup>3)</sup>인 경우에는 바세나르 협정에 따른 통제를 받아야 함.

○ 북한개설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사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해당되는 바, 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함.

○ 불온 통신에 대한 규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보호 등은 일반 국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관련 국내법상의 규율대상임.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

3) 전략물자란 무기 또는 무기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으로써 그것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으로 무기류와 이와 관련 제품만을 의미하는 방산물자를 포함, 첨단설비, 재료, 화학제품 등 광범위함.

○ 그러나 남북한에는 각기 상이한 법적 관할권이 존재하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전자상거래가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함.

## 나. 기술적 여건

○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사항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및 이행, 물품배송과 대금결제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즉, 택배업자,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 은행 등의 금융결제업자, 인증사업자 및 보안사업자 등의 다양한 사업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초기 금융, 인증, 보안사업자 등의 조직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북한의 기업환경이 아직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음.<sup>4)</sup>

-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완결될 수 있는 전송망이 전자상거래에 절대 필요하나, 남북한간에는 아직 단일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북남교역(nkmall.com)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eTrust 마크 인증을 획득한 바 있음. eTrust 인증제도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가 공동 시행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인증제도로써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업적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구매 등 전과정을 평가, 정부기준에 부합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만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 하는 제도임. (주)북남교역의 nkmall.com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 보안 교육을 자체인력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nkmall.com의 회원정보 DB는 외부네트워크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함. (주)북남교역에 의하면 내부에서도 지정된 관리자만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의 개인정보 접근 시간 등을 모두 기록하여 관리하는 한편,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함.

-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교환으로부터 시작되는 바, 이의 성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통신표준과 문서표준이 고려되어야함.
  - 통신표준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에 속하는 규약(Protocol)이 마련되어야 하는 동시에,
  - 남북한간 개방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문서교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인터넷상의 물품 구매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주문→결제→배달이라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원적 쇼핑(one stop shopping)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물품 배송업자인 택배업자, 대금결제 은행이나 카드회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다수 사업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와 법치주의가 보장되어야함.
  - 이와 같은 과정이 원만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기술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함.
  
- 그러나 남북한간 인터넷 상거래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 시간, 정해진 품질로 전달될 수 있는 물류배송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고객 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센터, 상품의 대량 확보, 배송거리 및 개별 물류 이동의 최소화, 물류자동화 시스템 등 효율적인 물류배송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불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형태는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남북한간의 인터넷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보안 및 인증시스템 상의 취약성을 안고 있음.
  - 전자상거래 상 교환되는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거래당사자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제3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함.
  - 제3자를 통해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CA: Certificate Authority)의 남북한간 적용도 북한 여건의 미비로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
  
- 무엇보다도 북한은 인터넷망을 폐쇄 네트워크로 운영,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다수의 거래처와 자유로운 데이터교환이 불가능함.
  
- 이와 같은 상황이 남북한간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Ⅲ.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 방안

#### 1. 기본 방향

- 남북한 전자상거래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가 규제 일변도로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관련 협회를 구성, 공동기준을 만들어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규범 및 규율방식을 정하도록 함.
  - 협회에 남북한 전자상거래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정부는 감시 및 조정자로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아날로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자상거래의 주체 선정과 객체인 상품 결정 등을 포함, 제반사항을 점진적·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함.
  
- 핵문제 해결의 가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주력함.

- 개인이 북한사업자와 직접 접촉해 물건을 받는 경우, 일일이 정부가 사전 승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괄승인 후 북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 분기별과 같은 일정기간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기간제 승인방법을 택함.

○ 남북 당국자간 전자상거래 합의서 체결을 위해 준비함.

## 2. 세부 추진 방안

### 가. 단계별 추진방안

○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전자상거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

#### <제1단계>

- 핵문제 해결이전 제1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연계 강화 및 남한이 북한기업과 제휴하여 추진하는 BB2C(남북한 합작기업 대 남한 소비자) 형태의 사업을 추진함.
- 남한의 하드웨어나 인프라 사업자가 북한의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경제적 및 기술적 강화 방안을 마련함.

### <제2단계>

- C2B(남한 소비자 대 북한 기업) 및 C2G(남한 소비자 대 북한 정부) 전자상거래를 추진함
  
-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통신망 광역화와 통신기간사업의 북한 이전 등 남북한간의 통신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남북한이 통신협정을 체결,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 인터넷 무역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 정보검색이나 의사소통 및 광고 마케팅 활동 등 좁은 의미의 교역 형태를 남북한간에 적용

### <제3단계>

- B2C(남한 기업 대 북한 소비자), C2C(남한 소비자 대 북한 소비자) 및 사이버무역을 추진함.
  
- 핵문제 해결 이후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 지역에서 개설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되어 남한 기업과 남한의 소비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생산, 구매, 결제, 재무, 수송, 행정, 서비스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수행함.
  - 주문→대금결제→배송→물품수령의 형태가 광범위하게 적용

-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거래를 위한 시장, 기업 및 각종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바이어를 발굴하여 반출·입 계약을 체결하는 사이버 무역을 남북한간에 적용함.
  - 신용장발행, 수출입 승인이나 추천, 보험증권발행, 수출입신고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무역절차의 간편화 추진
  
- 거래처 발굴, 광고 마케팅을 비롯, 상담 및 계약 체결, 결제 및 상품 운송이나 물류방식을 전환함.
  - 전자우편, 인터넷 팩스 및 인터넷 폰 등을 이용, 저렴하고 효율적인 거래상담과 계약체결, 상품주문이나 대금결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화물의 이동상황도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 체제의 획기적 변화와 세계 인터넷망으로의 연결 등을 포함한 대외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남북한간 전자상거래를 추진함.
  - 인터넷상 자체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무역거래알선 사이트 등을 활용,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제의하고,
  - 남북한의 반입업자는 인터넷상 거래제의에 대한 조회 및 청약을 통해 반출업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함.

**<표 1> 남북한 단계별 전자상거래 추진 방안**

단 계	형 태	내 용
제1단계	BB2C	남북한 통신협정 체결, 전자상거래 추진 기술 조건 마련, 인터넷 무역 기반 확보
제2단계	C2B, C2G	사이버무역 및 인터넷상거래 추진
제3단계	B2C, C2C	전자상거래 주체 확대

**나. 거래주체 및 대상**

**<거래주체>**

- 거래주체는 상기 언급한 당사자간의 거래 형태를 전제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초기에는 북한 당국자와 남한의 개별기업 또는 개인간의 거래, 즉 B2G, 또는 C2G가 주된 거래유형이 될 것임.
-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은 전자상거래의 주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업 주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의 질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거래대상 재화의 종류>**

- 거래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디지털형 재화의 거래에 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할 것임.

- 북한은 옥류관 음식과 바둑프로그램인 은별을 CD로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고전에 대한 번역사업도 완성도가 높아 조선실록과 팔만대장경 완역본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임.
  - 조선실록 및 팔만대장경 등의 내용을 번역, 디지털 재화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외국어 번역프로그램과 같은 지적재산권 형태의 재화가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재화로 상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그 외에도 북한은 음성인식, 문자인식, 지문인식 등의 각종 인식기술 면에서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의 각종 제어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도 국제적인 기술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자동지문인식 프로그램’이나 ‘체질분류 및 진단체계’ 등과 관련된 거래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워드프로세스, 한의학의료정보시스템, 자연어처리시스템, 위성 등 항공분야, 멀티미디어, 게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반면, 아날로그형 재화나 서비스는 실제 배송과 함께 온라인상의 결제방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아울러 물품의 반입과 반출, 원산지 표시 문제, 물품 하자에 따른 반송처리나 하자담보 문제를 보증할 수 있는 사업자 보험이 적용되어야 함.

## 다. 법·제도적 장치

### (1) 남북 당국간 합의 사항

#### <거래주체>

- 남북한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에 합의, 거래주체와 객체의 범위, 거래 지역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기초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모든 거래행위를 일반계약<sup>5)</sup>과 계획계약<sup>6)</sup>의 두 가지 유형만으로 구별, 남한의 법제와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바,
  -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분쟁발생에 대비, 상이한 계약법과 상법 및 은행(보험)법의 통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거래대상>

- 거래 대상은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에 우선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법규범의 기초여건상 남북한이 거의 대동소이한 지식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부터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할 것임.
  - 아날로그 재화의 경우에는 결제방식과 배송문제가 중요 합의대상이 될 것임.

#### <재산권 보호>

- 남북한 당국간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5) 일반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으로 우리의 민사계약에 해당됨.

6) 계획적 계약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정 계약으로 위반 시 형벌, 벌금이 있음.

-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규범, 합의서 형태의 당국간 법적 규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 남북한이 각자 지적재산권보호협약을 체결, 디지털재의 전자상거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우선 디지털재의 온라인 거래가 당국간의 재산권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합의서가 채택될 필요가 있음.
- 남북한이 각기 지적재산권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디지털 재화의 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임.<sup>7)</sup>

### <신원 확인>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에 의한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의 신원 확인이 필요함.
  - 거래 당사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즉, 인증기관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등록, 상대방이 인증기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반출·입 업자는 제3의 신용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고, 거래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교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계약 체결 후 운송업체, 보험회사 및 은행 등을 물색,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함.

---

7) 북한은 지적재산권법에 해당하는 상표법(1998.1.14 제정, 1999.2.26 수정), 발명법(1998.5.13 제정, 1999.3.11 수정보충), 저작권법(2001.4.5 제정)을 제정, 이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를 시도한 바 있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국가적 조치에 의해 경제와 과학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지적 제품(지적재산)으로 유통시키는 제도가 나왔다”고 보도(2004.1.22). 지적제품의 개념은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서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무형의 지적 재부”를 말하며, 여기에는 “발명, 창의고안, 설계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비결(신기술·노하우)” 등이 포함되고 이들 지적제품은 유통과정에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음.

### <분쟁 해결>

○분쟁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국내거래에서 조차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은 하나, 국제적인 사이버 조정 및 중재관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 Online Ombuds Office([www.ombuds.org](http://www.ombuds.org)), Internetneutral ([www.internetneutral.com](http://www.internetneutral.com)), eResolution([www.disputes.org](http://www.disputes.org))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술적 요소와 법제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2) 사업자간 합의사항

○남북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조건, 이행방법, 계약 결제, 물류·배송 등의 내용을 결정함.

### <대금결제>

○송금결제방식을 마련하고 결제방식과 결제은행을 합의로 결정함.

○대금결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북한과 공동협력함.

○신용카드 결제

-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금결제수단임.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번호의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전송표준을 활용함.<sup>8)</sup>

---

8)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장점은 신용카드사의 신분보증으로 인터넷상에서 쇼핑

○ 전자수표 시스템을 통한 결제

- 전자수표 시스템은 대금청구서를 수령한 물품구매자가 PC, 스크린 전화기 등의 장치를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은행계좌를 경유하여야만 가치의 이전이 가능

○ 전자자금 이체

- 전자적 수단에 의해 금융기관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이 이루어지는 자금이동으로 인터넷상의 사이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홈뱅킹이나 ATM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없이 제공 가능
- 전자자금이체 방식에는 지급이체<sup>9)</sup>와 추심이체<sup>10)</sup>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

-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①고객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익명성, ②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확정성, ③은행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인출하여 전자지갑형태로 휴대할 수 있는 휴대 가능성, ④전자현금을 인출 혹은 지불하거나 예금할 수 있는 양방향성 등의 특성을 지님.

---

이 가능하며 결제가 용이하다는 것과 이미 실용화되어 있어 기존의 법체계나 정부기구를 변경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단점은 소액결제에는 부적당하며, 개인정보의 누출 가능성으로 결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제한이 있다는 것임.

- 9) 지급 이체(credit transfer)는 지급인(채무자, 자금이체 지시자)이 자기의 거래은행(지급은행)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자금을 수취할 자(수취인)의 거래은행에 있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의 자금이체
- 10)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수취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대해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있는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자기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의 자금이체

### <물류관리 및 배송>

- 물류관리가 3S, 1L원칙(신속하고: speedy, 안전하고: safely, 정확하게: surely, 저렴: low)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함.
  - 물류조직, 창고, 인력, 운송수단 등의 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물류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 적절한 품질과 수량의 물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배송은 물류센터 또는 지역거점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상품으로 구분, 배송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물리적 상품인 경우에는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공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방식, 전자우편 배송방식, 인터넷 페이지 주소부여 방식이 있음.

### <보안 및 인증>

- 전자상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보안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신원확인: 제3자의 신분을 이용, 거래가 행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대금결제: 개방적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개인의 결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범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
  - 프라이버시 침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가 가로채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음.<sup>11)</sup>

- 따라서 기술적 측면의 시스템 보안과 시스템 내부의 자료보안을 의미하는 정보보안에 합의함.
  - 보안상의 위협 및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ISO 7498-2의 인증(Authentication), 접근제어(Access Control), 데이터 기밀성(Data Confidentiality),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부인봉쇄(Non-repudiation)를 적용
  
-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을 승인하는 목적의 전자 서명의 사용이 요구됨.

---

11) (주)북남교역 게시판에는 남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달리 북한과의 전자상거래시 남한 개인신상정보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가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의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IV. 정책적 고려사항 및 향후과제

##### <거래의 공신력 담보>

- 북한 사업자와의 계약내용 이행과 집행, 거래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물품의 내용, 포장, 배송, 대금결제, 하자담보와 관련한 제반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 등
  
- 남북한 전자상거래 시 이중과세로 인한 손해 발생에 유의해야 함.
  - 물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해결 가능할 것이나, 물품거래의 이행보장을 하기 위해 상사중재 및 상사거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남북한간 거래가 직교역이 아닌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할 경우, 발생하는 과다 결제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남북한간 직접 결제 수단의 확보
  
-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라 결제나 배송 문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상품 하자 발생 시 반출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 등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북한 측에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남한 사업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바, 사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 구축이 요구됨.
  
- 남북한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계약법 체계가 마련되어야함.
  - 특히, 물품에 대한 반환소송은 남북한간 분쟁이 제기되는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상호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북한 측 계약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사업자 보험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반환청구 및 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제도 적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반·출입 절차 개선>

- 북한 재화나 서비스의 반·출입과 검역에 대한 절차 개선이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입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전자상거래의 반·출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임.
  - 다만, 디지털 재화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사업자 승인으로, 디지털 재화의 개인별 반·출입에 대해서는 접촉에 대한 승인으로 대처함.

#### <관련 법령의 개편>

- 남북한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간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의 세부적인 검토를 포함,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열린우리당은 남북 주민 간 인터넷 접촉을 포함, 인터넷사이트 가입·이용, 채팅, E메일 송수신을 “남북 교류 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sup>12)</sup>을 2004년 7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바,

---

12)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교역당사자뿐 아니라 협력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협력사업의 내용은 승인제에서 승인·신고 병행제로 전환함. 또한 현재의 가능 품목 지정제를 제한 품목 지정제로 전환, 남북 간 교역범위를 확대하였음.

- 현행 인터넷 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의 개선이 요구됨.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

#### <남북 인터넷 통합망 구축>

-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중국을 경유하지 않은 남북한 통합망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광섬유가 개성까지 부설되어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인터넷과 모바일 통합, 유·무선망의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